

연구자를 위한 신고·보상 제도 안내

1 목 적

본 안내문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고·보상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며, 상세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,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을 참고할 것을 권고함

2 신고 제도

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💡 신고 대상

- 부정청구 등 행위 (공공재정환수법): 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, 과다 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한 경우
- 부패행위 (부패방지권익위법):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※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는 권익위 신고 건에 한하여 권익위에 보상 신청 가능

구분	예시
부정청구 등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✓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, 물품 또는 장비 구매✓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✓ 집행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, 비용 부풀리기
부패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✓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신규 개발로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✓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비 편취✓ 학생 인건비와 연구 수당 등을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

※ 「부패·공익신고 및 보상사례집」(국민권익위 발간), 청렴포털 '신고맞춤사례' 참고

💡 신고 방법

- 온라인: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- 방문: 정부합동민원센터(서울), 국민권익위원회(세종)
- 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, (우)30102

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
- 관련 법·제도 안내, 신고, 상담, 보호·보상 신청 및 처리 과정 열람 서비스 등 제공
- 포털에서 신고 후 보상 신청 시 '나의 신고사건 조회' 기능을 통해 간편 처리 가능

💡 **신고 상담** 온라인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 /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 또는 110

💡 **신고자 보호**

- **(비밀 보장)**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,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
- **(책임 감면)**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, 신고 관련 형사처벌, 징계, 불합리한 행정처분 감면 가능 (재량사항)
- **(신분보장 조치 신청)**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 신청 가능
- **(신변보호 조치 요청)** 신고자 등과 그 친족·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

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(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)

-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,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, 자료제출, 의견진술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(국민권익위가 수당을 지급하는 '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' 운영)
- ※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에서 국민권익위에 신고 시 활용 가능

3 보상 제도

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

< 보상금 지급 기준 >

보상대상가액*	보상금(최대)
1억원 이하	보상대상가액의 30%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3천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20%
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	1억 1천만원 + 5억원 초과금액의 14%
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	3억 2천만원 + 20억원 초과금액의 8%
40억원 초과	4억 8천만원 + 40억원 초과금액의 4%

* 보상대상가액이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의미

💡 **보상금 신청**

- 온라인: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- 방문: 정부합동민원센터(서울), 국민권익위원회(세종)
- 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, (우)30102